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22. 3. 18.>

지정감사인 지정 방법(제14조의2제4항 관련)

1. 국세청장은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영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큰 순서대로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산정한 지정감사인 지정 점수(이하 이 표에서 "지정감사인 지정점수"라 한다)가 높은 감사인을 차례대로 지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지정한다.
 - 가. 제1호에 따라 지정감사인으로 결정된 감사인이 지정회계감사 대상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한 감사인인 경우에는 지정감사인 지정점수가 그 다음으로 높은 감사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
 - 나. 지정회계감사 대상인 2개 과세연도 중 두 번째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대해 지정회계감사를 실시한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
3. 제1호 및 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 지정감사인 지정점수가 동일한 감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지정한다.
 - 가. 제5호가목의 점수가 높은 감사인
 - 나. 해당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가 많은 감사인
 - 다.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등록을 먼저 한 감사인
4. 지정감사인 지정 점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 계산식에서 n이 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를 지정감사인 지정 점수로 한다.

$\text{지정감사인 지정 점수} = \frac{\text{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1 + 3^n}$
n: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해의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 해당 감사인이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된 공익법인등의 수를 말하며, 같은 과세연도에 같은 감사인을 하나 이상의 공익법인등의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할 경우 그 지정 예정 대상 공익법인등의 수를 포함한다.

5. 제4호의 계산식에서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란 다음 각 목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말한다.
 - 가. 매년 9월 1일 현재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별로 다음 표의 경력기간별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한 점수를 모두 더한 점수

경력기간 15년 이상	경력기간 10년 이상	경력기간 6년 이상	경력기간 2년 이상	경력기간 2년 미만
120	115	110	100	80
경력기간: 감사인에 소속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한 기간				

- 나. 매년 9월 1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한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한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에 110을 곱한 점수